

19만이 설계하는 금속산별의 미래

산업전환협약 등 2021년 산별교섭 요구



하나. 통일요구

산업전환협약

-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·자동화·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,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노사 공동결정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.
- 산업전환 시기 조합과 회사가 공동결정할 미래 계획의 의제와 방향은 아래와 같다.
 - 고용안정·양질의 일자리 확보 : 산업전환과 산업융합·복합에 따른 사업재편과 투자가 고용불안을 야기하거나,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한다.
 - 교육·훈련 :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·훈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한다.
 - 노동안전과 인권보호 :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노동시간·강도·방식과 성과 측정 방식의 변화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, 이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한다.
 - 기후위기 대응 : 기후위기 대응에 노사가 함께 노력하며,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한다.
 - 공정거래 : 산업전환에 따른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원·하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마련한다.
- 조합과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구체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·집행·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2021년 말까지 결정해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.
- 조합과 (사용자협의회)·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·업종·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,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·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.

둘. 임금인상 요구

1. 월 기본급 99,000원 정액 인상 (정기·호봉승급분 제외)

- 생활임금 보장·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.
- 기본급 인상 금액에 각종 임금항목 조정에 따른 월평균 고정급 조정 효과 합의를 병기.
- 고정급은 연장노동, 업무·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 지급하는 임금항목의 합.
- 금속 산별 임금체계 진전.

셋. 중앙교섭 요구

1.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·사 공동선언

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는 심각성에 공감하며 인류의 생존과 생명 안전을 우선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.
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은 국제, 국가 차원뿐 아니라 노사 모두가 힘을 모으는 가운데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과제를 분명히 인식한다.
- 회사는 자체 운영·공정뿐 아니라 회사를 넘어서는 전·후방 공정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환경 구축 및 재원 마련에 나서며, 노사는 이를 공동으로 논의·집행·점검한다.
- 회사는 사업 확장·전환 등을 위한 투자가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하며, 이를 위해 노조와 함께 탄소배출 증감효과를 사전 검토한다.
- 노사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환경 구축 시 ▲사내하청·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장 ▲공정·기술 개편 대응 교육훈련과정 마련 ▲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 구축 ▲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작업군 우선 보호 등의 대응책을 함께 수립한다.
- 노사는 탄소중립환경 구축을 위한 산업재편이 일방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하며, 정부와 지자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방안, 산업전환 과정에서 쇠락하는 지역·업종의 노동자·사업주 지원과 보상책 수립을 함께 요구한다.

2.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만 원 또는 월 통상임금 2,260,000원 중 높은 금액

- 저임금 비정규직 금속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.
- 미조직 금속산업 노동자 조직화와 금속노조 영향력 확대.
- 금속 산별 임금체계 진전.
- 비정규직, 이주노동자, 사내하청, 외주 협력사(사외하청) 노동자 적용.

넷. 교섭방침

- 모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다.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다. 교섭권 위임과 대각선교섭의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한다.
 - 기업 교섭단위(지부·지회)에 교섭권 위임 불가능. 단 조합 임원의 교섭 역할 현실화를 위해 상견례와 체결 시 필참, 교섭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참석.
 - 지역지부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. 지역지부 임원이 대각선교섭 결할 시 위와 동일.
- 교섭 돌입은 중앙교섭 → 지부교섭 → 사업장교섭 순. 교섭 돌입 시기 최대한 일치.
 - 조기 교섭이 필요할 경우 조합의 승인 득함.
 - 교섭 돌입이 늦어지는 단위 최소화 위해 중집 중심 점검·지도.

- 대정부교섭과 완성3사 공동교섭은 중앙교섭 상견례 이후 순차 추진.
- 모든 교섭단위는 통일요구 쟁취를 교섭 내용의 최우선 등.
- 임금교섭은 중집 결정에 따라 돌입.
- 모든 조정신청은 위원장 명의로 함(규약 68조). 조합 지침 따라 일제히 조정신청.
 - 조기 조정신청 필요할 경우 중집 승인 득함.
 - 조정신청 늦어지는 단위 최소화 위해 중집 중심 점검·지도.
- 교섭·투쟁의 조직 질서와 집중성 유지 위해 교섭 일정은 ①을 원칙으로 정한다.
 - 중앙교섭(화), 지부집단교섭(목), 사업장교섭(금).

다섯. 타결방침

1. 통일요구 합의 없이 지부·지회 타결 없다.

- 통일요구 합의 없이 중앙교섭 합의 전 타결 불가.
- 통일요구 합의한 경우 전국 파업 등 조합 투쟁지침 복무 결의를 전제로 중집 승인 후 의견접근 가능.

2. 모든 단체교섭 체결할 때 합의절차 준수, 조합 승인을 얻는다.

- 모든 임금·단체협약 위원장 명의 체결.
- 교섭단위별 합의는 아래 절차를 따른다.
 - ▲ 중앙교섭 : 의견접근 ⇒ 중앙위원회 의견접근안 승인 ⇒ 조합원 찬반투표 ⇒ 조인식
 - ▲ 지부교섭 : 의견접근 ⇒ 지부교섭단 지부운영위 심의 ⇒ 중집 승인 ⇒ 조합원 찬반투표 ⇒ 조인식
 - ▲ 사업장보충교섭 : 의견접근 ⇒ 지부운영위 심의 ⇒ 조합 승인요청서 제출(교섭·합의 경과, 의견접근안, 지부운영위 심의 일시와 결과, 찬반투표 예정일 적시) ⇒ 위원장 승인 ⇒ 조합원 찬반투표 ⇒ 조합 직인신청서 제출 ⇒ 조인식 ⇒ 임단협 합의서 전문 조합 제출·DB System 등록
- ▲임금·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▲단협 규정 사항(고용, 임금체계 변화 등) ▲노조와 합의한 사항 ▲단체교섭에서 이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없음(규약 73조, 지회모범규칙 38조).
-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, 협상의 명칭과 무관하게 단체교섭으로 간주해 위 합의 절차 준수.